

부세 안내

2025년도

~한글판~



목 차

직업과 세금

개인부민세.....	1
법인부민세.....	5
이자 등에 부과되는 부민세 부민세 이자할	7
특정배당 등에 부과되는 부민세 부민세 배당할	8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금액에 부과되는 부민세/부민세 주식 등 양도소득할	8
법인사업세.....	9
개인사업세.....	12
지방소비세.....	15
부동산 취득세	16
담배세.....	17
골프장 이용세	17
경유인취세.....	18
자동차세 (환경성능할)	19
자동차세 (종별할)	20
광구세.....	22
수렵세.....	22
오사카부의 고정자산세	23
숙박세.....	23

기타

부세를 납부하려면	24
연체금.....	27
체납처분.....	27
감면 · 유예.....	28
심사청구.....	28
납세증명서 교부	29

■ 납세하실 분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세액이 과세되는 ‘균등할’과 전년도 소득금액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할’이 있으며 매년 1월 1일의 상황에 따라 다음 분이 납부합니다.

납세하실 분	납세액
부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	균등할액 소득할액
부내에 사무소, 사업소 또는 가옥과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 해당 시정촌에 주소가 없는 분	균등할액

단 다음 분은 비과세가 됩니다.

균등할 및 소득할이 비과세인 분	· 생활보호법에 따라 생활부조를 받고 있는 분 · 장애자, 미성년자, 과부 또는 한부모로 전년도 합계 소득금액이 135만엔 이하인 분(퇴직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의 소득할은 제외)
균등할이 비과세인 분	· 전년의 합계 소득금액이 각 시정촌의 조례에서 정하는 액수 이하인 분 (비과세가 되는 금액은 시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할이 비과세인 분	· 전년의 합계 소득금액이 [35만엔 × (본인, 동일생계 배우자, 부양친족수 합계) + 32만엔+10만엔] 으로 구한 금액 이하인 분 단 동일생계 배우자 및 부양친족이 없는 분은 전년의 합계 소득금액이 (35만엔+10만엔) 이하인 분

■ 납세액

● 균등할 : 연액 1,300 엔

※ 균등할의 세율 인상에 대하여

오사카부는 삼림 지역에서의 사방댐 정비 등 및 도시녹화를 활용한 흡수대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2027년도까지 균등할 세액에 300엔을 가산합니다.

● 소득할 : 개인부민세는 전년도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underbrace{(\text{전년도 소득금액} - \text{소득공제액})}_{\text{과세소득금액}} \times \text{세율} - \text{조절공제액} - \text{세액공제액} = \text{소득할액}$$

● 세율 : 4 % (오사카시 · 사카이시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2%.)

※ 오사카시 · 사카이시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세율에 대하여

부비부담 교직원제도 재검토에 따른 세율 이양으로 오사카시 · 사카이시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소득할 세율이 개인부민세는 2%, 개인시민세는 8%가 됩니다. (퇴직소득의 분리과세는 제외)

● 과세공제액

공제의 종류	공 제 액
배당공제	주식배당 등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외국세액공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그 나라의 소득세나 주민세에 상당하는 세금이 과세된 경우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주택차입금 등 특별세액공제 (주택론 공제)	[소득세의 주택론 공제가능금액 중 소득세에서 완전히 공제되지 못한 금액] 과 [소득세의 과세 총소득금액, 과세 퇴직소득금액 및 과세 산림소득금액의 합계액에 5%를 곱한 금액(최고 97,500 엔(주 1))] 중 적은 금액(=주민세 주택론 공제액)에서 부민세는 5분의 2(주 2)가 공제되며 시정촌민세는 5분의 3(주 2)이 공제됩니다. (주 1) 2014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입주하신 분 중 소비세 등 세율 8% 또는 10%로 구입하신 분은 소득세의 과세 총소득금액 등의 금액에 7%를 곱한 금액(최고 136,500 엔) (주 2) 오사카시 · 사카이시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공제율은 부민세가 5분의 1, 시민세가 5분의 4입니다. ○대상자 · 2009년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입주하여 소득세의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은 분
기부금 세액공제	다음의 (1)과 (2)의 합계액이 공제됩니다. (1) 기본공제액(주 1) 부민세는 (부민세 공제대상 기부금의 합계액(주 1) - 2,000엔) × 4%(주 2) 시정촌민세는 (시정촌민세 공제대상 기부금의 합계액(주 1) - 2,000엔) × 6%(주 2) (주 1) 공제대상 기부금의 합계액 한도액은 총소득금액 등의 30%입니다. (주 2) 오사카시 · 사카이시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공제율은 부민세 2%, 시민세 8%입니다. (2) 특별공제액(주 3) 부민세는 (총무대신의 지정을 받은 도도부현, 시구정촌에 대한 기부금 - 2,000엔) × (90% - 소득세의 한계세율 × 1.021(주 4)) × 5분의 2(주 5) 시정촌민세는 (총무대신의 지정을 받은 도도부현, 시구정촌에 대한 기부금 - 2,000엔) × (90% - 소득세의 한계세율 × 1.021(주 4)) × 5분의 3(주 5) (주 3) 도도부현, 시정촌에 대한 기부금(후쿠사토 납세)에만 적용되며, 부민세, 시정촌민세 소득할액의 20%가 상한입니다. (주 4) 2014년부터 2038년도까지 복구특별소득세에 상당하는 비율을 감면하는 조절을 합니다. (주 5) 오사카시 · 사카이시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공제율은 부민세가 5분의 1, 시민세가 5분의 4입니다.

● 조질공제액

합계 과세소득금액	공 제 액
200만엔 이하	'인적공제액 차액의 합계액(주1)' 과 '합계 과세소득금액(주2)' 중 적은 금액의 2% (오사카시·사카이시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1%)
200만엔 초과	{인적공제액 차액의 합계액 - (합계 과세소득금액 - 200만엔)} 의 2% (오사카시·사카이시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1%) 단 이 금액이 1,000엔 미만인 경우는 1,000엔 (오사카시·사카이시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500엔)

(주 1) '인적공제액 차액의 합계액'이란 소득세의 인적공제액(배우자공제나 부양공제 등 사람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과 주민세의 인적공제액과의 차액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주 2) 합계 과세소득금액이란 과세 총소득금액, 과세 퇴직소득금액 및 과세 산림소득금액의 합계액입니다.

● 소득공제액

공제의 종류	부민세·시정촌민세(2025년도분=2024년 소득)	비고																					
①잡손공제	다음의 (1), (2) 중 많은 쪽의 금액 (1) A의 금액 - (총소득금액 등 × 1/10) (2) A의 금액 중 재해관련 지출금액 - 5만엔 A=(손실액)-(보험금 등에서 보전된 금액)																						
②의료비공제	{ (지불한 의료비의 금액) - (보험금 등의보전액) } - (총소득금액 등 × 5% 또는 10만엔 중 적은 쪽) = 공 제 액 (한도액 200만엔)	'보험금 등의 보전액'에는 건강보험, 공제조합 등의 급부금이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손해보험, 생명 보험으로 보전된 금액 등이 있습니다.																					
셀 프메디케이션세제 (의료비공제 특례)	일정한 스위치 OTC 의약품 구입비용 (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을 제외) - 12,000엔 =공제액 (한도액 88,000엔)	본 특례를 적용하 경우는 의료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사회보험료공제	지불한 사회보험료 금액																						
④소규모기업공제 등 부금공제	지불 부금 금액																						
⑤생명보험료공제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공제액의 합계액 (합계 한도액 70,000엔) $\left[\begin{array}{c} \text{일반 생명보험료분} \\ (A \text{ 구 계약분} + B \text{ 신 계약분})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c} C \text{ 개호 의료보험분}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c} \text{개인연금보험분} \\ (D \text{ 구 계약분} + E \text{ 신계약분}) \end{array} \right]$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지불 보험료액</th><th>공제액</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구 계약 A 일반생명보험 D 개인연금보험</td><td>15,000엔 이하</td><td>지불액 전액</td></tr> <tr> <td>15,001엔 ~ 40,000엔</td><td>지불액 × 1/2 + 7,500엔</td></tr> <tr> <td>40,001엔 ~ 70,000엔</td><td>지불액 × 1/4 + 17,500엔</td></tr> <tr> <td>70,001엔 이상</td><td>35,000엔</td></tr> <tr> <td rowspan="4">신 계약 B 일반생명보험 C 개호의료보험 E 개인연금보험</td><td>12,000엔 이하</td><td>지불액 전액</td></tr> <tr> <td>12,001엔 ~ 32,000엔</td><td>지불액 × 1/2 + 6,000엔</td></tr> <tr> <td>32,001엔 ~ 56,000엔</td><td>지불액 × 1/4 + 14,000엔</td></tr> <tr> <td>56,001엔 이상</td><td>28,000엔</td></tr> </tbody> </table>	구분	지불 보험료액	공제액	구 계약 A 일반생명보험 D 개인연금보험	15,000엔 이하	지불액 전액	15,001엔 ~ 40,000엔	지불액 × 1/2 + 7,500엔	40,001엔 ~ 70,000엔	지불액 × 1/4 + 17,500엔	70,001엔 이상	35,000엔	신 계약 B 일반생명보험 C 개호의료보험 E 개인연금보험	12,000엔 이하	지불액 전액	12,001엔 ~ 32,000엔	지불액 × 1/2 + 6,000엔	32,001엔 ~ 56,000엔	지불액 × 1/4 + 14,000엔	56,001엔 이상	28,000엔	지불 보험료액 = 보험료 금액 - 잉여금 등 구 계약: 2011년 12월 31일 이전의 계약 신 계약: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계약 · 같은 계약내용에 구 계약과 신 계약 양쪽의 보험료가 있는 경우는 왼쪽의 계산식에 따라 구 계약과 신 계약별로 공제액을 계산하여 합계합니다. 이 경우 한도액은 28,000엔입니다.
구분	지불 보험료액	공제액																					
구 계약 A 일반생명보험 D 개인연금보험	15,000엔 이하	지불액 전액																					
	15,001엔 ~ 40,000엔	지불액 × 1/2 + 7,500엔																					
	40,001엔 ~ 70,000엔	지불액 × 1/4 + 17,500엔																					
	70,001엔 이상	35,000엔																					
신 계약 B 일반생명보험 C 개호의료보험 E 개인연금보험	12,000엔 이하	지불액 전액																					
	12,001엔 ~ 32,000엔	지불액 × 1/2 + 6,000엔																					
	32,001엔 ~ 56,000엔	지불액 × 1/4 + 14,000엔																					
	56,001엔 이상	28,000엔																					
⑥지진보험료공제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공제액의 합계액 (합계 한도액 25,000엔) $\left[\begin{array}{c} A \text{ 지진보험계약분}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c} B \text{ 구 장기손해보험계약 등} \end{array} \right]$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지불보험료액</th><th>공제액</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A 지진보험</td><td>50,000엔 이하</td><td>지불액 × 1/2</td></tr> <tr> <td>50,001엔 이상</td><td>25,000엔</td></tr> <tr> <td rowspan="2">B 구 장기손해보험</td><td>5,000엔 이하</td><td>지불액 전액</td></tr> <tr> <td>5,001엔 ~ 15,000엔</td><td>지불액 × 1/2 + 2,500엔</td></tr> <tr> <td></td><td>15,001엔 이상</td><td>10,000엔</td></tr> </tbody> </table>	구분	지불보험료액	공제액	A 지진보험	50,000엔 이하	지불액 × 1/2	50,001엔 이상	25,000엔	B 구 장기손해보험	5,000엔 이하	지불액 전액	5,001엔 ~ 15,000엔	지불액 × 1/2 + 2,500엔		15,001엔 이상	10,000엔	· 장기손해보험료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만기반환금이 있는 10년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하나의 손해보험계약 등이 지진보험 계약과 장기 손해보험 계약 양쪽의 계약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느 하나의 계약 구분만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구분	지불보험료액	공제액																					
A 지진보험	50,000엔 이하	지불액 × 1/2																					
	50,001엔 이상	25,000엔																					
B 구 장기손해보험	5,000엔 이하	지불액 전액																					
	5,001엔 ~ 15,000엔	지불액 × 1/2 + 2,500엔																					
	15,001엔 이상	10,000엔																					

공제의 종류	부민세・시정촌민세(2025 년도분=2024 년 소득)			비고	
⑦장애인공제	한 사람당 260,000엔 (특별장애자는 300,000엔, 특별장애자가 동거하는 부양친족인 경우는 530,000엔)			・본인, 동일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이 장애인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양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16 세 미만의 부양친족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⑧과부공제	260,000엔			한부모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①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하지 않은 분으로 부양친족(주)이 있으며 합계 소득금액이 500 만엔 이하인 경우 (주) 총소득금액이 48 만엔 이하로 다른 이의 동일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아닌 분 ②남편과 사별하고 재혼하지 않은(또는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는) 분으로 합계 소득금액이 500 만엔 이하인 경우	
⑨한부모공제	300,000엔			현재 혼인하지 않은 분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자녀(주)가 있으며 합계 소득금액이 500 만엔 이하인 경우 (주) 총소득금액이 48 만엔 이하로 다른 이의 부양친족이 아닌 자녀	
⑩근로학생공제	260,000엔			합계 소득금액이 75 만엔 이하로, 자기의 노동과 관련없는 소득금액이 10 만엔 이하인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⑪배우자공제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에 따른 공제액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분에게 적용됩니다.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			
		900만엔 이하	900만엔 초과 950만엔 이하		95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
	일반	33만엔	22만엔		11만엔
	노인 (※)	38만엔	26만엔		13만엔
(※)연령이 70세 이상인 분					
⑫배우자특별공제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에 따른 공제액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1,000만엔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 중 다음 경우는 제외됩니다. ①다른 납세자의 부양친족인 배우자 ②청색사업전종자에게 해당하는 배우자로 전종자 급여를 받는 분 또는 백색사업전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③배우자 자신이 이 공제를 받는 경우 그의 배우자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			
		900만엔 이하	900만엔 초과 950만엔 이하		95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
	480,001 엔~1,000,000 엔	33 만엔	22 만엔		11 만엔
	1,000,001 엔~1,050,000 엔	31 만엔	21 만엔		11 만엔
	1,050,001 엔~1,100,000 엔	26 만엔	18 만엔		9 만엔
	1,100,001 엔~1,150,000 엔	21 만엔	14 만엔		7 만엔
	1,150,001 엔~1,200,000 엔	16 만엔	11 만엔		6 만엔
	1,200,001 엔~1,250,000 엔	11 만엔	8 만엔		4 만엔
	1,250,001 엔~1,300,000 엔	6 만엔	4 만엔		2 만엔
1,300,001 엔~1,330,000 엔	3 만엔	2 만엔	1 만엔		
⑬부양공제	다음 구분에 따른 공제액			・부양친족이 있는 분에게 적용됩니다. ・16 세 미만의 부양친족에 대해서는 부양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공제액	해당자		
	일반	33만엔	16세 이상으로 하기 이외의 분		
	특정	45만엔	19세 이상 23세 미만인 분		
	노인	38만엔	70세 이상인 분		
동거 노친 등	45만엔	노인부양친족 중 본인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 등			
⑭기초공제	합계소득금액		공제액		
	2,400 만엔 이하		43 만엔		
	2,400 만엔 초과 2,450 만엔 이하		29 만엔		
	2,450 만엔 초과 2,500 만엔 이하		15 만엔		
	2,500 만엔 초과		0 만엔		

※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공제대상 배우자 및 부양친족에서 제외됩니다.

- 1 합계 소득금액이 48만엔이 넘는 분
- 2 청색사업전종자에 해당하는 분으로 전종자 급여를 받는 분 또는 백색사업전종자에 해당하는 분

■ 납세 방법

● 신고

부내 시정촌 내에 주소가 있는 분은 원칙적으로 3 월 15 일까지는 주소지의 시정촌에 신고서(시정촌민세와 같은 용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신 분이나 급여소득자인 분은 신고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납세

시정촌에서 송부되는 납세통지서(납부서)로 연 4 회(일반적으로 6 월, 8 월, 10 월, 1 월)(주)로 나누어 시정촌민세를 납부합니다. 단 급여소득자는 6 월부터 다음해 5 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특별징수됩니다

(주) 각 시정촌의 조례에 따라 납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주민세 특별징수에 대하여

개인주민세(개인 도부현민세와 개인 시정촌민세를 합한 지방세를 말합니다.)의 특별징수란 사업주(급여 지불자)가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같이 매월 급여를 지불할 때 종업원의 개인주민세를 공제하여 납세의무자인 종업원을 대신하여 종업원이 거주하는 시정촌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급여 지불자)는 원칙적으로 법인, 개인을 불문하고 특별징수의무자로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개인주민세를 특별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 321 조 4)

■ 납세하실 분

균등할과 법인세할이 있으면 다음 법인이 납부합니다.

납세의무자	납세액
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있는 법인 공익법인 등(상공회의소 등) 또는 인격이 없는 사단 등(청년단, PTA, 현인회 등)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자	균 등 할 액 법 인 세 할 액
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있는 공익법인 등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곳	균 등 할 액
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있는 공익법인(일본방송협회, 일본하수도사업단 등)	
부내에 기숙사 등이 있는 법인으로 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없는 곳	

■ 납세액

● 균등할

자본금 등의 금액 에 따라 5단계의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의자본금 등의 금액의 구분	세율
1,000만엔 이하인 법인 등(주)	2 만엔
1,0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의 법인	7.5만엔
1 억엔 초과 10억엔 이하의 법인	26만엔
10억엔 초과 50억엔 이하의 법인	108만엔
50억엔 초과 법인	160만엔

(주) ①공공 법인 · 공익 법인 등(지방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균등할을 부과할 수 없는 법인을 제외합니다.) ②인격이 없는 사단 등(지방세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③일반 사단 법인 · 일반재단 법인 ④자본금의 금액 또는 출자금의 금액을 가지지 않는 법인(보험업법에 규정된 상호회사를 제외합니다.)을 포함합니다.

※ 1 「자본금 등의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2조 제16호에 규정된 금액에서 무상 증감자 등의 금액을 가산/감산한 금액」과 「자본금의 금액 및 자본준비금 금액의 합계금액 또는 출자금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험업법에 규정된 상호회사와 관련해서는, 순자산 금액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의 24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2 「자본금 등의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단, 중간신고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전날) 현재의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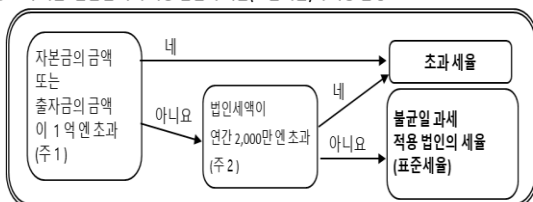
법인부민세(균등할)의 초과과세에 대하여

2025년 이후 수년간은, 오사카 엑스포 성공 및 성공의 레거시를 살린 성장을 한층 더 확고하게 만드는 데서 매우 중요한 기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거액의 수지 부족이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오사카의 성장을 지탱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전략에 입각하여 기업 성장을 가일층 지탱하는 기업 지원 정책에 투자해갈 수 있도록, 2028년 3월 31일까지 시작하는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법인부민세(균등할)에 대한 초과 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할

$$\text{법인세액} \times \text{세율} = \text{법인세할액}$$

○초과세율·불균일 과세 적용 법인의 세율(표준세율)의 적용 판정



세율(%)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사업연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기간에 시작되는 사업연도	
초과 세율	불균일 과세 적용 법인의 세율(표준세율)	초과 세율	불균일 과세 적용 법인의 세율(표준세율)
2	1	4.2	3.2

(주1) 자본금의 금액 또는 출자금의 금액이 1억 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종료일(중간신고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전날) 현재의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그리고, 보험업법에 규정된 상호회사는, 자본금의 금액 또는 출자금의 금액이 1억 엔을 넘는 법인으로 판정합니다.

(주2) 법인세액이 연간 2,000만 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2개 이상의 도도부현에 사무소 등을 둔 법인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법인세액)(신고서 제6호 양식 또는 제6호 양식(2)의 「⑤란」에 기재해야 할 금액)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계산식[2,000만 엔× 사업연도의 월수÷12월]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합니다. 이 경우의 사업연도의 월수는 캘린더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우수리는 1개월로 합니다.

■ 납세 방법

다음 기한까지 부세사무소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신고의 종류	신고와 납세기한
1 중간신고(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여 법인세의 중간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 예정 신고 $\frac{\text{이전 사업연도분으로서 납부한 세액 및 납부해야 할 것으로 확정된 세액}}{\text{이전 사업연도의 월수}} \times 6$ 가결산에 따른 중간신고(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간주하여 계산한 경우의 신고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2 확정신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3 부민세 균등할신고 공공 법인·공익 법인 등으로서 수익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의 신고	4월30일

(주) 협동조합 등을 통산 모법인으로 하는 통산 자법인(종속법인) 및 법인 과세 신탁인 경우에는 가결산에 따른 중간신고는 못합니다. 가결산에 따른 중간신고는, 그 세액이 예정 신고와 관련된 세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통산 자법인(종속법인)으로서 예정·중간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 신고세액을 산정할 때 통산 자법인(종속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한 통산 모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의 전날까지 월수를 「6」으로 바꾸고 곱합니다. 신고 기한은 통산 자법인(종속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한 통산 모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2개 이상의 도도부현에 사무소 등을 둔 경우에는 종업자 수에 따라, 각 도도부현마다 법인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법인세와 관련된 확정신고서 제출 기한의 연장 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그 취지를 신고함으로써 법인세와 동일한 기간만큼 신고서 제출 기한이 연장됩니다. 단, 이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대법인의 법인세는 전자정보처리조직 (eLTAX) 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대법인

- ① 사업연도 개시시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1 억엔을 초과하는 법인
- ② 상호회사, 투자법인, 특정목적회사

◆대상이 되는 신고서 등은 확정신고서, 중간(예정)신고서, 가결산에 따른 중간신고서, 수정신고서 및 각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모든 서류입니다.

◆전자신고로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미신고로 취급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장애 등으로 eLTAX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

법인부민세(법인세할),법인사업세의 초과과세에 대하여

오사카부에서는 도로망과 공공교통 등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도시기반정비의 재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인의 세 부담을 고려한 후 2026 년 10 월 31 일까지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의 법인부민세(법인세할) 및 법인사업세에 초과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납세하실 분

이자 등을 받는 분(개인)이 부내 금융기관 등의 영업소를 통하여 납부합니다.
(주)2016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이자 등에 대해서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납세액

지불 받을 이자 등의 금액(과세표준액)×세율 = 세액

● 지불 받을 이자 등

①은행이나 신용금고 등의 저축금 등의 이자

②특별공사채(주 1) 이외의 공사채 이자

③금융유사상품(정기적금, 저당증권, 일시불 양로(손해)보험 등의 이자, 차익 등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불받을 특정공사채 등의 이자 등에 대해서는 부민세 이자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민세 배당할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주 1) '특정공사채 등'이란 '특정공사채'(국채, 지방채, 외국국채, 외국 지방채, 공모공사채, 상장공사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공사채(동족회사가 발행한 사채는 제외) 등의 일정한 공사채), '공모공사채 투자신탁의 수익권', '증권투자신탁 이외의 공모투자신탁 수익권' 및 '특정목적신탁(사채적 수익권이 공모에 한함)의 사채적 수익권'을 말합니다.

다음 이자 등은 비과세됩니다.

- 장애자, 유족연금 등을 받는 과부 등의 비과세 이자 등 (소액예금 비과세제도, 소액공채 비과세제도의 원금은 각 350만원 이하)
-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비과세제도 이자 등 (재산형성주택저축, 재산형성연금저축의 원금 합계 550만원 이하)
- 비거주자가 지급 받는 이자 등
- 기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 등

● 세율 : 5% ※ 별도로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 15.315%가 과세됩니다.

■ 납세방법

이자 등의 지불 또는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특별징수 의무자)이이자 등을 지불할 때 그 금액에서 이자 등에 부과되는 부민세 (부민세 이자할)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부에 납부합니다.

■ 납세하실 분

특정배당 등을 받는 분(개인)이 특정배당을 지불하는 상장법인 등을 통하여 납부합니다.

■ 납세액

지불 받을 특정배당 등의 금액(과세표준액)×세율 = 세액

● 지불 받을 특정배당 등

- ①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 ②투자신탁에서 설정한 수익권의 모집이 공모로 결정된 것의 수익배분
- ③특정투자법인의 투자몫의 배당 등
- ④특정목적신탁의 사채적 수익권 잉여금 배당 중 공모된 것
- ⑤특정공사채의 이자
- ⑥특정계좌 외의 할인채 상환금

※ 2016 년 1 월 1 일 이후에 지불받을 특정공사채 등의 이자 등에 대해서는 부민세 이자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민세 배당할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할인채 상환금(특정계좌에 지불되는 것은 제외)에 대해서는 그 할인채를 상환할 때 상환금의 차익금액에 대하여 부민세 배당할이 과세됩니다.

● 세율 : 5 % ※ 이와 별도로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 15.315%가 과세됩니다.

■ 납세방법

특정배당 등을 지불하는 상장기업 등(특별징수 의무자)가 특정배당 등을 지불할 때 그 금액에서 특정배당 등에 과세되는 부민세(부민세 배당할)을 징수하여 다음달 10 일까지 부에 납부합니다.

단 원천징수 선택계좌 내의 배당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선택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증권업자 등(특별징수 의무자)가 특정배당 등을 지불할 때 그 금액에서 특정배당 등에 과세되는 부민세(부민세 배당할)을 징수하여 1 년분을 모아 다음해 1 월 10 일까지 부에 납부합니다.

■ 납세하실 분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금액을 받는 개인이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금액을 지불하는 증권업자 등의 본사를 통하여 납부합니다.

■ 납세액

지불받을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액)×세율 = 세액

● 지불받을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 ①원천징수 선택계좌 내 상장주식 등의 양도 대가
- ②원천징수 선택계좌 내에서 처리된 상장주식 등의 신용거래 등에 드는 차금결제 차익

● 세율 : 5 % ※ 별도로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 15.315%가 부과됩니다.

■ 납세방법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금액을 지불하는 증권업자 등(특별징수의무자)가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금액을 지불할 때 그 금액에서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금액에 부민세(부민세 주식 등 양도소득할)을 징수하여 1 년분을 모아 다음해 1 월 10 일까지 부에 납부합니다.

■ 납세하실 분

부내에 사업소 또는 사업소를 두고 사업을 하는 법인이 납부합니다.

단 공익법인 등(상공회의소 등) 또는 인격이 없는 사단 등(청년단, PTA, 현인회 등)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납세액

법인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산정 방식이 다른 사업을 병행하며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매 사업부문마다 각각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산정하고 해당 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합니다.

① 소득금액 과세법인 (지방세법 제72조의 2 제1항 제1호 나)

②~⑥이외의 법인

$$\text{소득(주1)} \times \text{세율} = \text{세액}$$

② 외형표준과세 적용법인 (동항 제1호 가)

각 사업연도 말의 자본금 금액 또는 출자금 금액이 1 억 엔을 초과하는 보통법인(간주과세 법인, 투자법인, 특정목적 회사,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을 제외합니다.)으로서 ③, ⑤, ⑥ 이외 법인(주2)

$$(\text{부가가치액(주3)} \times \text{세율}) + (\text{자본금 등의 금액(주4)} \times \text{세율}) + (\text{소득} \times \text{세율}) = \text{세액}$$

③ 전기공급업(④ 및 ⑤를 제외함), 도관 가스공급업, 보험업 및 무역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동항 제2호)

$$\text{수입금액(주5)} \times \text{세율} = \text{세액}$$

④ 소매 전기 사업 등 발전 사업 등 및 특정 도매공급 사업(주6)을 영위하는 법인 (⑤이외의 법인) (동항 제3호 나)

$$(\text{수입금액} \times \text{세율}) + (\text{소득} \times \text{세율}) = \text{세액}$$

⑤ 소매 전기 사업 등 발전 사업 등 및 특정 도매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외형표준과세 적용 법인 (동항 제3호 가)

$$(\text{수입금액} \times \text{세율}) + (\text{부가가치액} \times \text{세율}) + (\text{자본금 등의 금액} \times \text{세율}) = \text{세액}$$

⑥ 특정 가스공급업(주7)을 영위하는 법인 (동항 제4호)

$$(\text{수입금액} \times \text{세율}) + (\text{부가가치액} \times \text{세율}) + (\text{자본금 등의 금액} \times \text{세율}) = \text{세액}$$

(주1)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법인(공익법인 등 및 인격이 없는 사단 등)으로서 의료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포함합니다.) 또는 의료 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협동조합 연합회의 사회보험 진료와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2) 2025년 4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외형 표준과세 적용법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주3) 각 사업연도의 보수급여액, 순지불이자, 순지불임차료 및 단년도 손익의 합계입니다.

(주4) 각 사업연도 말일 시점에서의 「법인세법 제2조 제16호에 규정된 금액에서 무상 증/감자 등 금액을 가/감산한 금액」과 「자본금 금액 및 자본준비금 금액의 합계액 또는 출자액」 중 큰 금액입니다.

(주5) 각 사업의 수입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공급업 경우 각 사업연도에 전기공급업에 대하여 수입해야 할 금액의 총액에서,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조금,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주6) 소매 전기 사업 등 · 발전 사업 등은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특정 도매공급 사업은 2022년 4월 1일 이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주7) 2022년 4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가스공급업 중 도관 가스공급업(일반 가스도관 사업 및 특정 가스도관 사업을 말합니다.) 이외 사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가스사업자가 진행한 것을 말합니다.

● 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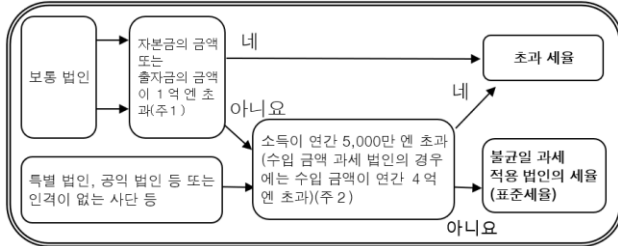
○ 세율표

법인의 종류		소득 등의 구분			세율(%)						
					사업연도 개시일						
					2025.4.1~	2022.4.1~ 2025.3.31	2020.4.1~ 2022.3.31	2019.10.1~ 2020.3.31	2016.4.1~ 2019.9.30		
① 소득금액과 세법인 (지방세법 제72조의 2 제1항 제1호 나)	①-1 보통법인 (주1), 공익법인 등, 인격이 없는 사단 등	소 득 할	경감세율 적용법인	연 400 만엔 이하의 소득	초과	3.75			3.65		
					표준	3.5			3.4		
				연 400 만엔 초과 연 800 만엔 이하의 소득	초과	5.665			5.465		
					표준	5.3			5.1		
				연 800 만엔 초과 소득	초과	7.48			7.18		
					표준	7			6.7		
				경감세율 부적용법인	초과	7.48			7.18		
					표준	7			6.7		
	①-2 특별법인 (주 1·2)	소 득 할	경감세율 적용법인	연 400 만엔 이하의 소득	초과	3.75			3.65		
					표준	3.5			3.4		
				연 400 만엔 초과 소득	초과	5.23			4.93		
					표준	4.9			4.6		
				경감세율 부적용법인	초과	5.23			4.93		
					표준	4.9			4.6		
② 외형표준과세 적용법인 (동항 제 1 호 가)				소 득 할	경감세율 적용법인	연 400 만엔 이하의 소득	초과	—(주 3)		0.495	0.395
							표준	—(주 3)		0.4(주 4)	0.3(주 4)
	연 400 만엔 초과 연 800 만엔 이하의 소득	초과	—(주 3)			0.835	0.635				
		표준	—(주 3)			0.7(주 4)	0.5(주 4)				
	연 800 만엔 초과 소득	초과	—(주 3)			1.18	0.88				
		표준	—(주 3)			1(주 4)	0.7(주 4)				
	경감세율 부적용법인	초과	1.18			0.88					
		표준	1(주 4)			0.7(주 4)					
	부가가치할				초과	1.26					
					표준	1.2	—				
	자 본 할			초과	0.525						
				표준	0.5	—					
	③ 전기공급업(④ 및 ⑤를 제외함), 도관 가스공급업, 보험업 및 무역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동항 제 2 호)	수 입 할	초과	1.065				0.965			
			표준	1				0.9			
④ 소매 전기 사업 등 발전 사업 등 및 특정 도매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⑤이외의 법인) (동항 제 3 호 나)	수 입 할	초과	0.8025			본표 ③을 참조					
		표준	0.75								
	소 득 할	초과	1.9425			—	—				
		표준	1.85			—	—				
⑤ 소매 전기 사업 등 발전 사업 등 및 특정 도매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외형표준과세 적용 법인 (동항 제 3 호 가)	수 입 할	초과	0.8025%			본표 ③을 참조					
		표준	0.75%(주 4)								
	부가가치할	초과	0.3885			—	—				
		표준	0.37	—		—	—				
	자 본 할	초과	0.1575			—	—				
		표준	0.15	—		—	—				
⑥ 특정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 (동항 제 4 호)	수 입 할	초과	0.519		본표 ③을 참조						
		표준	0.48(주 4)								
	부가가치할		초과	0.8085		—	—	—			
	자 본 할		초과	0.33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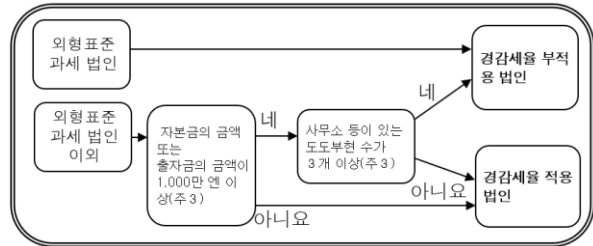
- (주 1) 특별법인이란 협동조합, 신용금고, 의료법인 등입니다. 보통법인이란 특별법인, 공익법인 등 및 인격이 없는 사단 등 이외의 법인을 말합니다.
- (주 2) 특별 법인 중 조세특별조치법 제 6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상기 표의 세율 구분에 더하여, 소득 중 연간 10 억 엔을 넘는 금액에 관한 법인사업세의 세율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2019 년 10 월 1 일 이후에 시작되는 사업연도분 : 6.095%(표준세율 5.7%)
 - 2014 년 10 월 1 일부터 2019 년 9 월 30 일까지 기간에 시작되는 사업연도분 : 5.895%(표준세율 5.5%)
- (주 3) 2022 년 4 월 1 일 이후에 시작되는 사업 연도부터 외형표준 과세 적용 법인은 경감세를 부적용 법인입니다.
- (주 4) 오사카부에서는 법인사업세에 적용하지 않지만 특별법인사업세 또는 지방법인특별세의 기준법인소득할액 또는 기준법인수입할액 계산에 이용합니다.

○ 세율 적용 흐름도

1. 초과 세율·불균일 과세 적용 법인의 세율(표준세율)의 적용 판정



2. 「경감세를 부적용 법인」 해당 여부 판정



- (주 1) 자본금의 금액 또는 출자금의 금액이 1 억 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종료일(중간신고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 개월이 경과한 날의 전날) 현재의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 (주 2) 소득이 연간 5,000만 엔 초과 또는 수입 금액이 연간 4 억 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또는 수입 금액(2개 이상의 도도부현에 사무소 등을 둔 법인과 관련해서는 분할 전의 소득 또는 수입 금액)(신고서 제 6 호 양식의 「**28**란」에 기재해야 할 금액 또는 「**38**란」에 기재해야 할 금액 또는 신고서 제 6 호 양식(2)의 「**28**란」에 기재해야 할 금액, 「**38**란」에 기재해야 할 금액 또는 「**46**란」에 기재해야 할 금액(당해 금액에 1,000엔 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수리를 버린 금액)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연도가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이 계산식 $[5,000만 엔(또는 4 억 엔) \times 사업연도의 월수 \div 12월]$ 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합니다. 이 경우의 사업연도의 월수는 캘린더에 따라 계산하되 1 개월 미만의 우수리는 1개월로 합니다.
- (주 3) 경감세를 부적용 법인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종료일(중간신고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 개월이 경과한 날의 전날)의 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 납세방법

법인부민세와 같은 기한까지 부세사무소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 2 개 이상의 도도부현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진 경우에는 종업자 수 등에 따라, 각 도도부현마다 소득 등을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정관, 기부 행위, 규칙, 규약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이하 「정관 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에 대한 정시 총회가 소집되지 않거나 또는 통산 법인이 다수 존재하는 등 이와 공통되는 이유에 의해 소득의 금액 등의 계산을 완료할 수 없으므로, 그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확정신고서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법인은,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①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 개월 이내(통산 법인과 관련해서는 4 개월 이내), ②당해 법인이 회계감사인을 둔 경우로, 또한 당해 정관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6 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 ③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한 월수 이내에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2020 년 4 월 1 일 이후에 시작되는 사업 연도분부터, 대법인의 법인세신고는 전자정보처리조직 (eLTAX) 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대상이 되는 대법인
 - ① 사업연도 개시시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1 억엔을 초과하는 법인
 - ② 상호회사, 투자법인, 특정목적회사
 - ◆대상이 되는 신고서 등은 확정신고서, 중간(예정)신고서, 가결산에 따른 중간신고서, 수정신고서 및 각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모든 서류입니다.
 - ◆전자신고로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미신고로 취급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장애 등으로 eLTAX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

■ 납세하실 분

부내에 사업소, 사무소를 설치하여 법률로 정하는 제1종, 제2종, 제3종 사업을 하는 개인이 납부합니다.

구분	세율	사업 종류			
제1종 사업 (37업종)	5%	물 품 판 매 업	보 험 업	금 전 임 대 업	물 품 임 대 업
		부 동 산 임 대 업	제 조 업	전 기 공 급 업	토 석 채 취 업
		전 기 통 신 사 업 (방 송 사 업 포 함)		운 송 업	운 송 취 급 업
		선 박 정 계 장 업	창 고 업	주 차 장 업	청 부 업
		인 쇄 업	출 판 업	사 진 업	좌 석 대 여 업
		여 관 업	요 리 점 업	음 식 점 업	주 선 업
		대 리 업	중 개 업	도 매 업	환 전 업
		공 중 목 욕 탕 업 (제 3 종 사 업 이 외 의 것)		연 극 흥 행 업	유 기 장 업
		유 람 소 업	상 품 거 래 업	부 동 산 매 매 업	광 고 업
		흥 신 소 업	안 내 업	관 혼 상 제 업	

제2종 사업 (3업종)	4%	축 산 업	수 산 업	신 탄 제 조 업
-----------------	----	-------	-------	-----------

제3종 사업 (30업종)	5%	의 료 업	치 과 의 료 업	약 제 사 업	수 의 업
		변 호 사 업	사 법 서 사 업	행 정 서 사 업	공 증 인 업
		변 리 사 업	세 리 사 업	공 인 회 계 사 업	계 리 사 업
		사회보험노무사업	컨 설 턴 트 업	설 계 감 독 자 업	부 동 산 감 정 업
		디 자 인 업	각 종 기 예 사 업	이 용 업	미 용 업
		클 리 닝 업	공중목욕탕업(센토)	치 과 위 생 사 업	치 과 기 공 사 업
		측 량 사 업	토지가옥조사사업	해 사 대 리 사 업	인 쇄 제 판 업
	3%	안 마 , 마 사 지 또 는 지 압 , 침 , 유도접골 그 외 의 료 업 과 유사 한 사 업			장 제 사 업

■ 납세액

$$(\text{사업 소득 및 부동산 소득의 금액} + \text{소득세의 사업 전종자 공제액} - \text{개인사업세의 사업 전종자 공제액} + \text{청색신고 특별공제액} - \text{손실의 이월 등 공제액} - \text{사업주 공제액}) \times \text{세율} = \text{세액}$$

● 사업 소득 및 부동산 소득의 금액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사업을 통해 생긴 소득으로, 원칙적으로, 소득세에서의 사업 소득 및 부동산 소득의 계산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세의 사업 전종자 공제액

사업을 영위하는 분과 생계를 함께하는 15세 이상 친족으로, 오로지 그 사업에만 종사하는 분에게 적용됩니다.

○ 청색 사업 전종자 공제액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사업 전종자 급여액과 같습니다.

단, 소득세에서 배우자 공제 등을 선택함으로써 인하여 사업 전종자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소득세의 확정신고서 「사업세에 관한 사항」란에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또한 사업세에서 사업 전종자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급여액을 공제합니다.

○ 백색 사업 전종자 공제액

각 사업 전종자에 대하여, 다음 ①과 ② 중 낮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① 아래 사업 전종자 구분에 따라 각각 아래에 정한 금액

ㄱ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배우자인 사업 전종자 86만 엔

ㄴ ㄱ에 제시한 자 이외 사업 전종자 50만 엔

② 사업 전종자 공제 전의 소득 금액 ÷ (사업 전종자 수 + 1)

● 청색신고 특별공제액

소득세의 청색신고 특별공제는, 개인사업세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손실의 이월 등 공제액

○ 결손금(손실·피재 사업용 자산의 손실) 이월 공제

① 손실의 이월 공제

손실이 발생한 연도분에 대하여 기한 내에 청색신고를 하였고 또한 그 이후 연속해서 신고하신 경우에는 3년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피재 사업용 자산의 손실 이월 공제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고 또한 그 이후 연속해서 신고하신 경우에는 3년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자산의 양도 손실(이월) 공제

사업용 자산을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 생긴 손실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셨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색 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연속해서 신고하신 경우는, 완전히 공제되지 못한 손실액을 3년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공제액

연간 290만 엔

단,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할액표와 같습니다.

월 할액표

(단위 : 천 엔)

사업 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사업주 공제액	242	484	725	967	1,209	1,450	1,692	1,934	2,175	2,417	2,659	2,900

※ 월수는 캘린더에 따라 계산하되 월수를 계산하여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합니다.

■ 납세 방법

● 신고

3월 15일까지 부세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 분은 신고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① 소득세의 확정신고서 또는 개인주민세 신고서를 제출하신 분
- ②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290 만엔(사업주 공제액) 이하인 분

● 납세

납기는 원칙적으로 8월, 11월의 연 2 회입니다. 8월에 부세사무소에서 송부하는 납세통지서로 각 납기까지 납부합니다. 세액(연세액)이 1 만엔 이하인 경우는 8월에 전액을 납부합니다.

※11월에 납부할 납부서는 8월에 함께 송부합니다.

그리고 이와 다른 달에 납세통지서를 송부하는 경우는 당해 납세통지서에 기입된 납기까지 납부합니다.

■ 납세하실 분

소비세와 같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산의 양도나 역무 제공 등의 국내거래와 외국화물 인수에도 과세되며 국내거래에 부과되는 것을 '양도할' 외국화물의 인수에 부과되는 것을 '화물할'이라 하여 다음 분이 납부합니다.

구분	납세하실 분
양도할	과세자산을 양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화물할	과세자산을 보세지역에서 인수하는 개인 및 법인

지방소비세는 국내의 상품판매나 서비스 제공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세금분은 가격에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납세액

소비세액(과세표준액)×세율 = 세액

● 세율

	표준세율	경감세율
지방소비세율	2.2% (소비세액의 78분의 22)	1.76% (소비세액의 78분의 22)
소비세율	7.8%	6.24%
합계	10%	8%

■ 납세방법

'양도할'은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화물할'은 관할 세관에 소비세와 함께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납부된 지방소비세는 나라에서 세무서나 보세지역이 있는 도도부현으로 지불합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대하여

소자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속에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나라와 함께 사회보장 담당하는 지방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14년 4월부터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지방소비세 수입은 사회보장 4 경비(주) 기타 사회보장시책(사회복지, 사회보험 및 보건위생에 관한 시책을 말합니다.)에 충당합니다.

(주)제도로 확립된 연금, 의료 및 개호의 사회보장급부 및 소자화 시책에 드는 경비

■ 납세하실 분

부동산(토지와 가옥)을 매매, 교환, 증여, 신축 등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가 납부합니다.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며 등기 여부, 유무상, 취득 이유에 관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나 가옥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생략한 경우나 건축한 가옥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 납세액

$$\text{부동산가격(과세표준액)} \times \text{세율} = \text{세액}$$

● 부동산가격

과세표준액이란 구입가격이나 건축공사비 등의 가격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시정촌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주1)입니다.(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액이 아닙니다.)

단 주택이나 택지비준토지(주2)의 취득이 2027년 3월 31일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의 1/2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주1) 가옥을 신축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등록 가격이 없으므로, 오사카부가 취득 시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취득한 다음해에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가격이 등록되지만, 그 가격과는 다릅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등록 가격을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도 오사카부가 취득 시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주2) 택지비준토지란 택지 이외의 토지로, 취득시의 과세표준액 결정이 해당토지와 상황이 비슷한 택지의 과세표준액에 준거한 토지를 말합니다.

● 세율

4 %입니다 (표준세율) . 단 특례조치로 취득한 날에 따라 다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일 \ 종류	토지	가옥	
		주택	주택 외
2008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	3%	3%	4%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면세점)

과세표준 대상이 되는 금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토지...10만 엔 미만인 경우
- 가옥...① 신축, 증축, 개축에 의한 것은 1호당 23만 엔 미만인 경우
- ② 매매, 교환, 증여 등에 의한 것은 1호당 12만 엔 미만인 경우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비과세)

- ① 상속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② 종교법인이, 그 법인의 본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③ 학교법인이, 직접 보육 또는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④ 공공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로나 보안림, 묘지 용지를 취득한 경우 등

■ 납세방법

● 납부 수속과 납세 관련 상담

부세 사무소에서 과세표준액,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통지서 겸 납부서를 송부 드립니다. 이 서면에 지정된 기일(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또한, 납세통지서 겸 납부서를 송부하기 전에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에 대하여(알림)」 등으로 예정세액, 납부기한 등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기가 어려운 경우 물건 토지를 소관하는 부세 사무소 납세과에서 상담 받으십시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체납 연체금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 납세하실 분

부내 소매 판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제조 담배의 매도 등을 한 자(일본담배산업(주), 담배 수입업자 및 도매 판매업자)가 납부합니다.

■ 납세액

판매한 제조담배의 개비 수(과세표준)×세율 = 세액

● 세율

【제조담배에 부과되는 세율】

구분	세목	세율(1,000개비 당)
부세	부담배세	1,070엔
국세	담배세	6,802엔
	담배특별세	820엔
시정촌세	시정촌담배세	6,552엔

■ 납세방법

도매업자 등이 매월 말일까지 전월분을 계산하여 나니와키타 부세사무소에 신고, 납부합니다.

※담배 1 갑에 포함되는 세금(1 갑 20 개비들이 580 엔 담배의 경우)

세외 가격 222.4 엔	시정촌 담배세 131.04 엔	부 담배세 21.4 엔	담배세(국세) 136.04 엔	담배특별세 (국세) 16.4 엔	소비세 52.72 엔
------------------	---------------------	-----------------	---------------------	-------------------------	----------------

(2025 년 4 월 현재)

■ 납세하실 분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납부합니다. 단, 아래 1~6 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 18 세 미만인 분
 - 70 세 이상인 분
 - 신체장애자수첩 등을 교부받은 분
 - 국민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당해 국민 스포츠 대회 경기 또는 공식적인 연습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
 - 학교교육법 제 1 조에 규정하는 학교(유치원 제외)의 학생 또는 아동, 인솔하는 교원이 당해 학교의 교육 활동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
 -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해당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또는 공식 연습으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 ※ 단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이용자가 1~6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학교교육법 제 1 조에 규정하는 학교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 대학(단기대학 포함) 및 고등전문학교를 말합니다.
 ※ 국제경기대회는 각의 결정 또는 승인이 있는 것에 한합니다.

■ 납세액

● 세율

이용요금, 홀 등을 기준으로 한 등급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세 율 (1 인 1 일에)	1,200엔	1,150엔	1,000엔	800엔	650엔	450엔	350엔

■ 납세방법

특별징수 의무자(골프장 경영자)가 이용요금과 함께 징수하여 매월 15 일까지 전월분을 계산하여 나니와키타 부세사무소에 신고, 납부합니다.

■ 납세하실 분

다음에 해당하는 분이 납부합니다.

- 1 특약업자 또는 원매업자로부터 경유를 실제로 인취하는 분
- 2 경유에 경유 이외의 것을 혼합하여 제조한 혼합경유를 판매한 분
- 3 제조한 경유를 소비 또는 양도한 특약업자 및 원매업자 이외의 분
- 4 자동차의 연료로서 경유 이외의 연료유를 판매 또는 소비한 분
- 5 경유를 수입한 특약업자 및 원매업자 이외의 분 등

■ 납세액

1 ℓ 당………… (특례세율) 32,100 엔 (본칙세율) 15,000 엔

원칙적으로 ‘특례세율’이 적용되지만 휘발유의 평균소매가격(주)이 3 개월 연속 1 리터당 160 엔을 넘게 되는 경우는 재무대신의 고시를 받아 ‘본칙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후 휘발유의 평균소매가격이 3 개월 연속 1 리터당 130 엔을 밑돌게 되면 재무대신의 고시를 받아 ‘특례세율’ 이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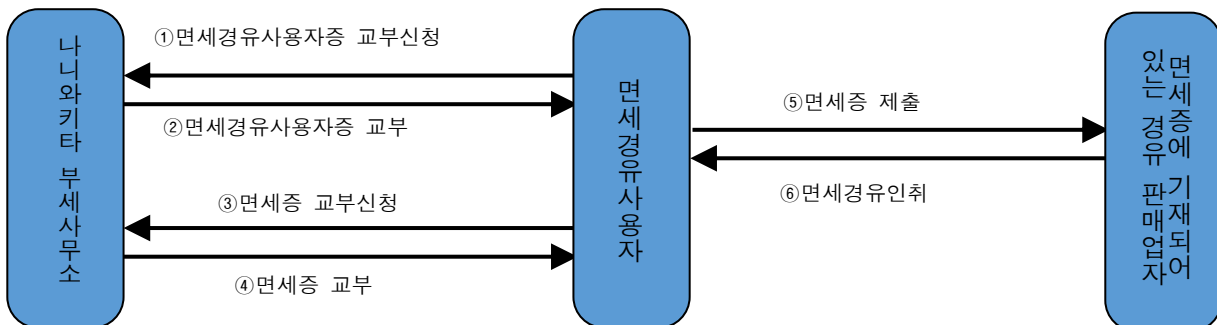
이 규정은 동일본대지진 복구상황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날까지 적용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주) ‘휘발유의 평균소매가격’ 이란 소매물가 통계조사규칙 제 1 조에서 규정한 소매물가 통계조사의 각 월별 결과로 도시별 자동차용 가솔린 소매가격(소비세 포함)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소매가격 통계조사’ 결과는 총무성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용도로 경유를 사용하는 경우 면세증을 교부받으면 면세됩니다.

- (1)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에틸렌 등의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재
- (2) 선박(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이용되는 선박은 제외합니다.), 철도, 궤도용 차량의 동력원
- (3) 농업, 임업용기기의 동력원
- (4) 전기공급업, 광물 채굴사업, 비계 토공공사업 등

(주) 상기(2)~(4)의 면세조치에 대해서는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납세방법

상기 1 에 부과되는 세금은 특별징수의무자(특약업자나 원매업자)가 경유대금과 합하여 징수하여 매월 말일까지 전월분을 계산하여 나니와키타 부세사무소에 신고, 납부합니다.

상기 2~4 에 부과되는 세금은 해당하는 분이 매월 말일까지 전월분을 계산하여 나니와키타 부세사무소에 신고, 납부합니다.

상기 5 에 부과되는 세금은 해당하는 분이 경유를 수입할 때까지 해당 수입분을 나니와키타 부세사무소에 신고, 납부합니다.

■ 납세하실 분

자동차를 취득하신 분이 납세합니다. 단, 특수자동차(로드롤러, 블도저 등)와 이륜차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매시에 판매자가 그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을 때(할부판매인 경우)는 해당자동차의 구입자가 취득자로 간주되어 구입자가 납부합니다.

■ 납세액

자동차 취득가격(과세표준액) × 세율 = 세액

● 자동차의 취득가액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자동차에 부가하여 하나가 되는 물품(예를 들어 라디오, 스테레오, 내비게이션, 에어컨 등)의 가격은 포함되나 예비타이어, 시트커버, 매트, 표준공구 등의 부속품 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나 연고자에게 싸게 산 경우 등은 통상 거래가격이 취득가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취득가격이 50 만엔 이하인 경우는 면세됩니다.

● 세율

자동차세(환경성능할)는, 당해 자동차가 환경에 주는 부하 등의 정도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세율에 대해서는, 부세 홈페이지 「부세아라카르트(府税あらかると)」를 참조해 주십시오.

[大阪府 自動車税\(種別割\) 税額表](#)

검색

■ 납세방법

자동차 등록 또는 사용 신청 시에 자동차세 사무소에 자동차세(환경성능할/종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합니다.

■ 납세하실 분

자동차의 주소가 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이 납부합니다.

자동차 매매시에 판매자가 그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을 때(할부판매의 경우)는 해당 자동차의 구입자를 소유자로 간주하여 구입자가 납부합니다.

자동차를 양도(이전등록)한 경우 해당 년도의 자동차세는 구 소유자에게, 다음년도부터는 신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그리고 이륜 소형 자동차, 경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시정촌에서 경자동차세(종별할)가 과세됩니다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자, 전쟁부상자, 지적장애자 및 정신장애자 분에 대해서는,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동차세(환경성능할・종별할) 감면 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

■ 납세액

[大阪府 減免のしおり](#)
[검색](#)

자동차의 종류, 용도, 총배기량 등에 따라 세율(연세액)이 정해져 있으나,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나 자동차를 말소등록(폐차)한 경우에는 월할계산으로 과세 또는 감액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동차세(종별할) 세액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大阪府 自動車税\(種別割\) 税額表](#)
[검색](#)

● 월할계산에 의한 과세

$$\text{연 세액} \times \frac{\text{등록월의 다음달부터 3월까지의 월수}}{12} = \text{월할세액 (100 엔 미만은 버림)}$$

● 월할계산에 의한 환부

연 세액에서 상기의 월할계산에 의한 과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 납세 방법

● 신고

자동차를 새로 소유하거나 양도・폐차한 경우는 자동차세사무소에 자동차세(환경성능할・종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세

부과기일(매년 4 월 1 일)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4 월부터 다음해 3 월까지 1 년분의 세금(연액)을 부에서 송부하는 자동차세납세통지서로 5 월에 납부합니다.

신규등록시의 월할계산에 의한 과세는 등록수속때 자동차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합니다.

● 납부서 교부에 대하여

자동차세 납부서를 창구에서 교부할 때는 등록번호와 차대번호의 뒤쪽 네자릿수를 확인합니다.

■ 그 린 화 세 제

환경 부하가 작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종별할)를 경감하고, 환경 부하가 큰 자동차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증가)하는 제도입니다.

● 환경부하가 적은 자동차

처음으로 등록(이하 「신차 신규등록」이라 함)을 하신 다음 표의 자동차에 대하여 신차 신규등록한 다음해의 세율이 경감되며, 경감된 해의 다음해 부터는 원래의 세율로 과세됩니다.(경감은 1 년분에 한합니다.)

구분	2024 년도에 자동차를 신차 신규등록한 경우 (2025 년도의 세율이 경감됩니다.)	
전기자동차, 일정한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한 천연가스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자가용 · 영업용을 불문)	세율을 약 75% 경감	
가솔린자동차, LPG 차, 클린디젤차(영업용 승용차에 한함)	2030 년도 연비 기준 70% 달성 및 2020 년도 연비 기준 달성	2030 년도 연비 기준 90% 달성 및 2020 년도 연비 기준 달성
	세율을 약 50% 경감	세율을 약 75% 경감

※ 「가솔린 자동차, LPG 자동차」는 2018 년 배출가스 기준 50% 이상 저감 달성 차량 또는 2005 년 배출가스 기준 75% 이상 저감 달성 차량에 한합니다.

※ 「클린디젤 승용차」는 2018 년 배출가스 기준 적합차량 또는 2009 년 배출가스 기준 적합 차량에 한합니다.

● 환경부하가 큰 자동차

신차 신규등록을 한 후 11 년을 넘은 디젤자동차 및 13 년을 넘은 가솔린자동차(LPG 차 포함)의 자동차세율은 약 15%(일반승합용 이외의 버스 및 트럭은 약 10%)높아집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가솔린 또는 경유와의 병용 차량은 제외한다), 메탄올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가솔린), 일반승합용 버스, 피견인자동차는 제외됩니다.

2025 년도 중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초도 등록에 대해서는 차검증을 보고 확인해 주십시오.

대상자동차	초도 등록
디젤자동차	2014년 3월 31일 이전
가솔린 · LPG차	2012년 3월 31일 이전

《인터넷으로 자동차세(종별할) 납세통지서 등의 송부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뀐 경우는운수 지국 등에서 주소변경등록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즉시 등록 수속을 못 하실 경우 인터넷(오사카부 행정 온라인 시스템)으로 자동차세(종별할) 납세통지서 등의 송부처 변경 수속을 해주십시오. 주소변경신청 입력에는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차대번호(뒤쪽 4 자리수)'가 필요하므로 자동차등록증(차검증)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표 변경만으로는 새 주소지로 납세통지서 등이 송부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 바랍니다.

[大阪府 自動車税\(種別割\)住所変更届](#)

검색

■ 납세하실 분

부내의 광구에 대하여 광업권(시굴권, 채굴권)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납부합니다.

■ 납세액

구 분		세 율
①사광(砂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광구	시굴광구	면적 100아르 마다 연 200엔
	채굴광구	면적 100아르 마다 연 400엔
②사광을 목적으로 하는 광구		면적 100아르 마다 연 200엔
③석유 또는 가연성 천연가스를 목적으로 하는 광구		상기 구분 ① 세율의 3분의 2

■ 납세방법

나니와키타 부세사무소에서 송부하는 납세통지서(납부서)로 5 월에 납부합니다.

■ 납세하실 분

‘조수의 보호 및 관리,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렵자 등록을 한 사람이 납부합니다.

※수렵세는 목적세로 수입은 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시책에 충당합니다.

■ 납세액

면허의 종류	종 별	세 율
제 1 종 총사냥(주1)	① 부민세의 소득할액을 납부하는 분	16,500엔
	② ①의 동일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	
	③ 부민세의 소득할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분	11,000엔
	④ ③의 동일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	
	⑤ ② 중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분	
그물사냥 또는 올가미사냥	⑥ 부민세의 소득할액을 납부하는 분	8,200엔
	⑦ ⑥의 동일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	5,500엔
	⑧ 부민세의 소득할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분	
	⑨ ⑧의 동일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	
	⑩ ⑦ 중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분	
제 2 종 총사냥(주2)		5,500엔

(주 1) 제 1 종 총사냥...장약총

(주 2) 제 2 종 총사냥...공기총

※ 제 1 종 총사냥면허 등록을 받은 분이 공기총을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됩니다.

※ 다음 분이 수렵자 등록을 받는 경우는 2029 년 3 월 31 일까지 수렵세가 감감됩니다.

· 대상조수포획원, 인정 조수포획 등 사업자의 종사자...면세

· 수렵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이전의 1 년 이내에 허가포획 등을 한 분...상기 세율의 2 분의 1

■ 납세방법

수렵자 등록을 받을 때 등록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합니다.

■ 납세하실 분

부과기일(매년 1 월 1 일)현재 대규모 상각자산(주 1)으로 그 가격이 시정촌의 과세한도액(주 2)을 넘는 상각자산을 보유한 법인 등이 납부합니다.

(주1) 하나의 시정촌에 소재하는 납세의무자의 상각자산으로,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과세정액(시정촌의 인구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넘는 것을 말합니다.

(주2) 시정촌에 과세할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과세정액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정촌의 재정사정에 따라 과세정액을 증액하는 특례가 있으며, 이 경우 한도액은 증액 후의 금액이 됩니다.

■ 납세액

시정촌의 과세한도액을 넘는 부분의 금액(과세표준액)×세율 (표준세율 1.4%) = 세액

※ 시정촌의 과세한도액까지의 금액은 시정촌이 과세합니다.

■ 납세방법

● 신고

매년 1 월 31 일까지 부세사무소에 신고합니다.

● 납세

부에서 송부된 납세통지서(납부서)로 4 월, 7 월, 12 월, 2 월로 연 4 회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별도의 납기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박세

오사카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국제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도시의 매력을 높임과 동시에 관광 진흥을 도모하는데 총당하기 위하여 오사카부에서는 2017 년 1 월부터 법정외 목적세로 숙박세를 도입하였습니다.

■ 납세하실 분

부내의 호텔, 여관, 간이숙소, 특구민박 및 주택숙박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에 숙박하는 분이 납부합니다.

■ 납세액

【2025년 8월 31일 이전】

숙박요금 (1인 1박)	세율
7,000엔 미만	과세되지 않습니다
7,000엔 이상15,000엔 미만	100엔
15,000엔 이상20,000엔 미만	200엔
20,000엔 이상	300엔

【2025년 9월 1일 이후】

숙박요금 (1인 1박)	세율
5,000엔 미만	과세되지 않습니다
5,000엔 이상15,000엔 미만	200엔
15,000엔 이상20,000엔 미만	400엔
20,000엔 이상	500엔

※ 숙박요금이란 식사요금, 소비세 등을 포함하지 않은 요금(식사는 안하고 잠만 자는 경우의 숙박 요금)과 숙박에 따른 임의성이 없는 요금(서비스료, 청소료 등)을 말합니다.

■ 납세방법

특별징수의무자(호텔, 여관, 간이숙소, 특구민박 및 주택숙박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영자)가 숙박자로부터 숙박요금과 함께 징수하여 매월 말에 전월분을 정리하여 나니와키타 부세사무소에 신고, 납부합니다.

부세를 납부하려면



부세는 각 부세사무소(원칙적으로 2025 년 9 월 30 일 취급 종료) 외에도 다음 장소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2025 년 5 월 1 일 현재)

납부 가능한 점포 등	구 분	명 칭
국내의 전 점포	은행	리소나,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아오조라, 미즈호, SBI신세기, 간사이미라이, 이케다센슈, 호쿠리쿠, 홋코쿠, 오가키교리쓰, 주로쿠, 산주산, 하쿠고, 시가, 교토, 난토, 기요, 다지마, 돗토리, 주고쿠, 아미구치, 아와, 하쿠주시, 이요, 시코쿠, 히고, 오이타, 가고시마, 도쿄스타, 도야바다이치, 아이치, 나고야, 도쿠시마타이쇼, 미나토, 가가와, 에히메, 고치
	노동금고	긴키
부내에 있는 점포 등	신용금고	신킨추오 금고, 오사카, 오사카코세이, 오사카시티, 오사카쇼코, 에이와, 기타오사카, 히라카타, 아마가사키, 교토
	신용조합	전국신용협동조합 연합회, 다이도, 세이교, 오사카교와, 오사카 저축, 노조미, 오사카부 의사, 긴키 산업, 미레
	농업협동조합	오사카부 신용농업협동조합 연합회, 기타오사카, 다카쓰키시, 이바라키시, 오사카호쿠부, 오사카센슈, 이즈미노, 사카이시, 오사카미나미, 오사카나카와치, 그린 오사카, 기타카와치, 오사카토부, 구카쇼, 오사카시
	유초은행	오사카부내의 각 우체국
「지방세 통일 QR 코드」에 대응하는 금융기관		상기 이외에 지방세 공동 기구가 지정한 금융기관(오사카부 외 유초 은행을 포함한다.)
인터넷전업은행 (※)		PayPay, 라쿠텐

※ 계좌이체만 대응합니다.

QR 코드는 (주)덴소 웨이브의 등록상표입니다.

■ 편의점 등

편의점 납부용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는 납부서(30만엔 이하)는 국내에 있는 다음 편의점 등에서 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등에서 납부하시는 경우 반드시 카운터에서 영수증을 받아 주십시오.

● 대상 세금

자동차세 (종별할), 개인사업세, 부동산취득세,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경유인취세, 부민세이자할, 부민세배당할, 부민세 주식 등 양도소득할, 골프장이용세, 숙박세, 부 담배세(휴대품 과세는 제외한다)

(2025 년 5 월 1 일 현재)

세븐일레븐, 데일리아마자키, 뉴아마자키 데일리스토어, 패밀리마트, 미니스톱, 아마자키 스페셜파트너숍, 아마자키 데일리스토어, 로손, MMK설치점 (※)

※MMK설치점이란 MMK(멀티미디어키오스크)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슈퍼마켓이나 드러그스토어 등의 점포를 말합니다.

■ 「지방세 통일 QR 코드」를 이용한 납부

「지방세 통일 QR 코드」가 인쇄된 납부서에 대해서는,스마트폰 결제 앱,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세금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개인사업세,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종별할), 자동차세 (환경성능할), 경유인취세, 골프장이용세, 부민세이자할, 부민세배당할, 부민세 주식 등 양도소득할, 숙박세, 부 담배세(휴대품 과세는 제외한다)

※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경유인취세, 골프장 이용세, 부민세 이자할, 부민세 배당할, 부민세 주식 등 양도 소득할, 숙박세, 부 담배세(휴대품 과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납세 의무자(특별 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기입하여 납세하는 「순으로 적는 납부서」는, 「지방세 통일 QR 코드」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단, 신고 기한 1 주 전까지 관할 부세 사무소에 신고서가 도착하였고, 납부서의 발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지방세 통일 QR 코드」에 대응하는 납부서의 송부(교부)가 가능해 집니다.

● 이용 가능한 납부 방법

스마트폰 결제 앱을 이용한 납부, Pay-easy(페이제)를 이용한 납부(인터넷 뱅킹 또는 페이지 번호를 발행하고 ATM 등을 이용하는 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상기 납부 방법 이외에 계좌 자동이체(다이렉트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이용하려면 eLTAX 이용자ID를 이용해 「지방세 지불 사이트」 로그인 및 계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단, 개인은 납부를 목적으로 eLTAX 이용자ID를 신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기 방법으로 납부하실 경우 영수증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서가 필요하신 경우 금융기관, 편의점 등에서 납부해 주십시오.

[地方税お支払サイト よくあるご質問](#)

검색

《스마트폰 결제앱을 이용한 납부》

[大阪府 スマホ 納税](#)[검색](#)

● 이용 가능한 스마트폰 결제 앱

이용 가능한 최신 스마트폰 결제 앱 등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지불 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 바랍니다.

[地方税お支払サイト スマートフォン決済アプリ一覧](#)[검색](#)

● 납부방법

- ①스마트폰 등에 앱을 다운로드하고 필요 사항 사전 등록 등을 합니다.
- ②앱을 실행하고 「지방세 통일 QR 코드」를 스캔하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나 편의점 등에서 납부해 주십시오.

《Pay-easy (페이ジー) 를 통한 납부》

[大阪府 ペイジー](#)[검색](#)

● 납부방법

스마트폰이나 PC로 납부서 뒤편 2차원 코드로 「지방세 지불 사이트」에 연결하셔서 화면 안내에 따라서 납부서 앞면 「지방세 통일 QR 코드」의 스캔 또는 납부서에 기재된 「e L 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의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지불 사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地方税お支払サイト よくあるご質問](#)[검색](#)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납부하실 경우

- ①「지방세 지불 사이트」의 「지불 방법」에서 「인터넷 뱅킹」을 선택합니다.
- ② 화면 안내에 따라서 필요 사항 등을 입력하고 각 금융기관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 ③ 표시된 금융기관 Web 사이트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지불 수속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각 금융기관과 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납부 수속은 「eLTAX」의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중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eLTAX 이용자ID로 「지방세 지불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이메일주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단, 개인은 납부를 목적으로 eLTAX 이용자ID를 신규 작성할 수 없습니다.

● 페이지 번호를 발행하고 ATM 등을 이용해 납부하실 경우

- ①「지방세 지불 사이트」의 「지불 방법」에서 「페이지 번호를 발행하고 본 사이트 이외(ATM 등)에서 지불한다」를 선택합니다.
- ② 화면 안내에 따라서 필요 사항 등을 입력하고, 「납부 정보 상세」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납부 정보 상세」화면에 표시되는 「페이지 정보」의 수납기관 번호, 납부 번호, 확인 번호 및 납부 구분을 사용해 ATM 또는 인터넷 뱅킹 등으로 납부해 주십시오.

※ 납부 수속은 「eLTAX」의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중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eLTAX 이용자ID로 「지방세 지불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이메일주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단, 개인은 납부를 목적으로 eLTAX 이용자ID를 신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경우》

●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

[大阪府 クレジットカード 納税](#)[검색](#)

● 납부방법

(2025년 5월 1일 현재)

- ①스마트폰이나 PC로 납부서 뒤편 2차원 코드로 「지방세 지불 사이트」에 연결하셔서 화면 안내에 따라서 납부서 앞면 「지방세 통일 QR 코드」의 스캔 또는 납부서에 기재된 「e L 번호」를 입력합니다.
- ②「지방세 지불 사이트」의 「지불 방법」에서 「신용카드」를 선택합니다.
- ③화면 안내에 따라 표시되는 Web 사이트에 연결하셔서 신용카드 정보 등을 입력하여 납부해 주십시오.

※납부 금액 이외에 시스템 이용료가 소요됩니다.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지불 사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eLTAX 이용자ID로 「지방세 지불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이메일주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단, 개인은 납부를 목적으로 eLTAX 이용자ID를 신규 작성할 수 없습니다.

[地方税お支払サイト よくあるご質問](#)[검색](#)

「지방세 지불 사이트」는
오른쪽 이차원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



■ 계좌이체(개인사업세에 한함)

개인사업세는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부세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취급하는 세금	개인사업세
취급 금융기관	부세 수납업무를 하는 은행・노동금고, 오사카부 소재 신용금고, 신용조합, 농업 협동조합의 본점 및 지점, 인터넷 전업 은행 ※유초은행(우체국)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항은 부세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府税 口座振替 검색
취급 예금계좌	보통예금, 당좌예금, 납세준비예금
신청수속	「오사카부세 예금계좌이체 의뢰서 겸 오사카부세 예금계좌이체 정지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예금통장에 사용한 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의 납부분부터 계좌이체가 시작됩니다. 또한 정기과세분의 납부 기한은 8월 말일(제1기분)과 11월 말일(제2기분)입니다.
이체일	납부 기한일에 지정 예금계좌에서 이체됩니다. [주의] 이체일에 예금잔액이 부족한 경우는 이체되지 않습니다.

※ 「오사카부세 예금계좌이체 의뢰서 겸 오사카부세 예금계좌이체 정지신청서」는 각 부세사무소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세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8월에 송부하는 납세통지서에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府税 口座振替関係申請書](#)

※ 계좌이체가 완료된 것은 예금통장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영수증 등 부세를 납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가 완료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소관 부세사무소에 신청해 주십시오.

「계좌이체 완료 확인서」를 발행합니다.

※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이체(과세)가 없는 경우 다시 계좌이체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세 납부는 캐시리스 결제가 편리합니다.

- 2025년 9월 30일을 기하여 각 부세사무소 내 지정 금융기관 파출창구를 폐지합니다.(※)
- 상기와 관련하여, 2025년 10월 1일 이후 각 부세사무소 창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세 납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
- 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실 경우에는 금융기관 창구 또는 편의점 등을 이용해 주십시오.



©2014 大阪府もずやん

※ 오사카 운수 지국, 자동차 검사등록소 부지 내 오사카 자동차세 사무소 각 분실은 제외합니다.

[大阪府税 納税](#)

연체금



납부 기한까지 부세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 체납이 되어 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체납액(1,000엔 미만의 우수리는 버림, 또한 그 금액이 2,000엔 미만일 경우는 모두 버림)에 다음 비율을 곱한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1 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연 7.3% (주 1) (주 2) (주 3)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1 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연 14.6% (주 1) (주 2)

(주 1) 2014 년 1 월 1 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기간의 연체금 비율은 「각 년도의 전년 12 월 15 일까지 조세특별조치법 제 9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대신이 고시한 비율에 연 1%의 비율을 가산한 비율」이 연 7.3%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해의 비율(이하 「특례기준비율」이라 한다)을 계산의 기본으로 하고,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1 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특례기준비율에 연 1%를 가산한 비율(연 7.3% 상한)」이 되며, 납부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 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는 「특례기준비율에 연 7.3%의 비율을 가산한 비율」이 됩니다.

(주 2) 2021 년 1 월 1 일부터 연체금 비율은 「각 년도의 전년 11 월 30 일까지 조세특별조치법 제 9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대신이 고시한 비율에 연 1%의 비율을 가산한 비율」이 연 7.3%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해의 비율(이하 「연체금특례기준비율」이라 한다)을 계산의 기본으로 하고,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1 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연체금특례기준비율에 연 1%를 가산한 비율(연 7.3% 상한)」이 되며, 납부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 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는 「연체금특례기준비율에 연 7.3%의 비율을 가산한 비율」이 됩니다.

(주 3)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1 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연체금 비율은 2000 년 1 월 1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각 년도의 11 월 30 일을 경과하는 날의 일본은행법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상업어음 기준할인율에 연 4%의 비율을 가산한 비율이 7.3%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합니다.

연체금 비율(2014년 이후)	연 7.3%의 비율	연 14.6%의 비율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2.9%	9.2%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2.8%	9.1%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2.7%	9.0%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2.6%	8.9%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2.5%	8.8%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2.4%	8.7%

체납처분



부세를 체납하면 독촉장을 발행하는 등 납세최고를 합니다. 그래도 완납하지 않는 경우는 귀중한 자원인 부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또한 납부 기한까지 완납한 분에 대한 공정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체납처분(차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동차세 (환경성능할·종별할)신체장애자, 전쟁부상자, 지적장애자 및 정신장애자 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가결한 자동차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1인 1대에 한함) 등

그리고 납세가 유예된 경우는 그 기간 중의 연체료가 일정비율 면제됩니다.

※상세한 것은 부세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府税 納税の猶予

검색

이 경우 심사청구서는 가능한 한 해당 부세사무소 등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등 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 개월 이내에 오사카부를 피고로 하여(소송 대표는 오사카부 지사입니다.) 재판소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가까운 부세사무소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국 및 오사카자동차세사무소에서는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것

(자동차세 (종별할) 납세증명서(계속검사·구조 등 변경검사용) 을 제외)

○ 납세증명서 교부청구서

각 부세사무소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세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大阪府 ビピッとネット 納税証明書交付請求書](#)

검색

○ 교부수수료

1 건에 400 엔의 수수료가 듭니다. 청구사항, 세목, 연도(사업연도)별로 각 1 건으로 계산합니다.
수수료는 창구에서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 본인확인서류

창구에 오신 분이 납세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다음 《납세증명서를 청구하시는 분께》를 참조해 주십시오.)

○ 위임장

대리인이 납세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는 납세증명서 교부 청구서의 위임란에 기재하거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위임란 및 위임장에는 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날인)이 필요합니다.

《납세증명서를 청구하시는 분께》

개인정보보호 등의 관점에서 납세증명서를 청구하실 때는 본인확인 서류를 제시해 주십시오.

본인확인 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본인확인을 위해 창구에서 제시하는 서류(원본)

운전면허증, 여권, 특별영주자증명서, 재류카드, 국민연금증서(수첩), 모자건강수첩, 신체장애자수첩, 마이넘버카드, 사원증, 학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자격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것

※ 납세증명서는 납세자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인확인서류 제시는 여러분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자동차세 (종별할) 납세증명서(계속검사·구조 등 변경검사용)에 대하여

○ 자동차세 (종별할) 납세확인 온라인화

오사카부에서는 차검을 받는 운수지국 등과 온라인으로 자동차세(종별할) 납세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차세(종별할) 완납을 확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차검시에 자동차세(종별할) 납세증명서(계속검사·구조 등 변경검사용)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납세증명서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세(종별할) 미납(연체금 포함)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운수지국 등에 납세정보가 제공되려면 자동차세(종별할) 납부 후 약 1 주 정도 걸립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납부필 여부에 대한 연락 또는 시스템 처리상 관계로, 2, 3 일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차검을 받으려는 분은 운수지국 등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종래와 같이 부가 발행하는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세 콜센터(0570-020156)에서 자동차세(종별할) 완납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이용해 주십시오.

그때 본인확인을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뒤에서 4 자리수)가 필요합니다.

※ 완납확인을 한 당일에 차검을 받는 경우는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검 받기 전날까지 완납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납세정보 확인을 위해 오사카부에서 운수지국 등에 제공되는 정보는 ①자동차등록번호 ②차대번호(뒤에서 4 자리수에 한함) ③자동차세(종별할) 납부상황(완납 또는 미납) 입니다. 주소, 성명, 세액 등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수지국 등에 납세정보 제공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정보제공을 중단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대응합니다. 상세한 것은 자동차세 콜센터 (0570-020156)로 문의해 주십시오.

재무부 세무국 세정과 2025 년 7 월 발행

(부세 홈페이지 [府税あらかと](#))

검색

〒559-8555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난코키타 1-14-16 오사카부 사키시마청사(사키시마 코스모타워)18 층

TEL06-6941-0351 / FAX06-6210-9932